무배당 펫퍼민트 Puppy&Family보험 다이렉트2408 특별약관

1.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특약 이름[통원의료비보장 고급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8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통원	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5만원
의료비	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8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6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16만원 1만원) × 80%, 15만원] 중 적은금액
 - = 1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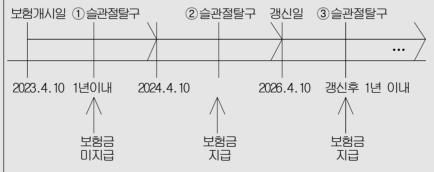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8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00만원-1만원) × 80%. 200만원] 중 적은금액
 - = 20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② 특약 이름[통원의료비보장 기본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7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통원	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5만원
의료비	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7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21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21만원 1만원)×70%, 15만원] 중 적은금액
 - = 1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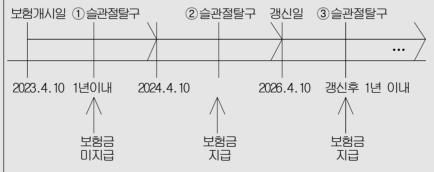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7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00만원-1만원)×70%, 200만원] 중 적은금액
 - = 20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③ 특약 이름[통원의료비보장 실속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3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5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통원	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0만원
의료비	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15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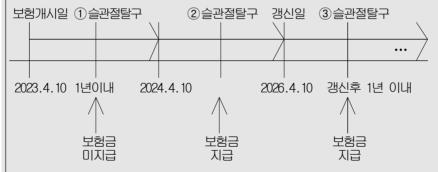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5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1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11만원 1만원)×50%, 10만원] 중 적은금액 = 5만원
-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5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00만원-1만원) × 50%. 150만원] 중 적은금액
 - = 15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⑥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 한 질병 및 상해
- ⑦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⑧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 생한 손해
- ⑨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 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 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①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② 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 담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 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파보 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파라 인플루엔자 감염, 전염성 간염, 아데노 바이러스 2 형 감염,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렙토스피 라 감염, 필라리아(심장사상충)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반려동물의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 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⑩ 서혜부허니아(서혜부탈장),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
- ⑪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 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② 한의학(단, 침술을 제외합니다.), 인도 의학, 허브요 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재활치료
- ③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귀 세정제 (이어 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진드기, 모낭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④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 수수료,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왕진 비용,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

- 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⑰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 (우송비 포함)
- 18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9) 스케일링, 발치 등을 포함한 치아의 치과치료비용 (단,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 보장(구강질환의 치료 목적임에도 치아에 행해지는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 다))
- ②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 ③ 제2항에 정하는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 제2항에 정하는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특약 이름[입원의료비보장 고급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8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입원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5만원
의료비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8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6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16만원 1만원) × 80%, 15만원] 중 적은금액
 - = 1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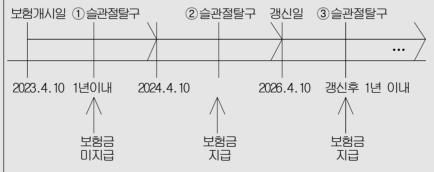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8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00만원-1만원) × 80%. 200만원] 중 적은금액
 - = 20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② 특약 이름[입원의료비보장 기본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7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입원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5만원
의료비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7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21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21만원 1만원)×70%, 15만원] 중 적은금액
 - = 1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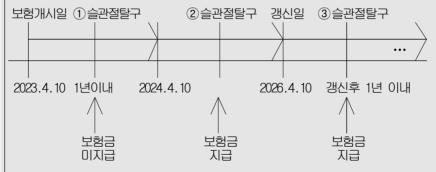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7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00만원-1만원)×70%, 200만원] 중 적은금액
 - = 20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③ 특약 이름[입원의료비보장 실속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3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5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입원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0만원
의료비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15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5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1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11만원 1만원) × 50%, 10만원] 중 적은금액
 - =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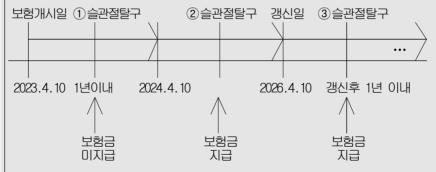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5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00만원-1만원) × 50%. 150만원] 중 적은금액
 - = 15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⑥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 한 질병 및 상해
- ⑦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⑧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 생한 손해
- ⑨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 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 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①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② 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 담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 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파보 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파라 인플루엔자 감염, 전염성 간염, 아데노 바이러스 2 형 감염,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렙토스피 라 감염, 필라리아(심장사상충)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반려동물의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 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⑩ 서혜부허니아(서혜부탈장),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
- ⑪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 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② 한의학(단, 침술을 제외합니다.), 인도 의학, 허브요 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재활치료
- ③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귀 세정제 (이어 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진드기, 모낭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4)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 수수료,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왕진 비용,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

- 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⑰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 (우송비 포함)
- 18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9) 스케일링, 발치 등을 포함한 치아의 치과치료비용 (단,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 보장(구강질환의 치료 목적임에도 치아에 행해지는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 다))
- ②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 ③ 제2항에 정하는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 제2항에 정하는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특약 이름[통원의료비Ⅱ보장 고급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1,000만원)을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8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지급 한도
통원 의료비	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5만원
 	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5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8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6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16만원 1만원) × 80%, 15만원] 중 적은금액
 - = 1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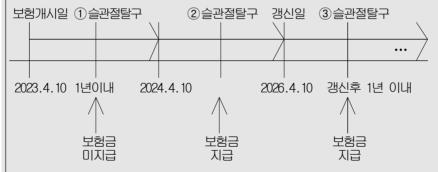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8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10만원-1만원) × 80%. 250만원] 중 적은금액
 - = 25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② 특약 이름[통원의료비Ⅱ보장 기본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1,000만원)을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7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통원 의료비	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5만원
J II 	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5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7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21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21만원 1만원) × 70%, 15만원] 중 적은금액
 - = 1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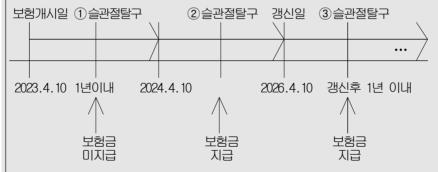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7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10만원-1만원) × 70%. 250만원] 중 적은금액
 - = 25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③ 특약 이름[통원의료비Ⅱ보장 실속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5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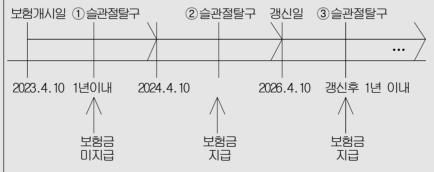
	항목		지급 한도
통원 의료비	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0만원
J II 	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5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1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11만원 1만원)×50%, 10만원] 중 적은금액 = 5만원
-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5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10만원-1만원)×50%, 200만원] 중 적은금액
 - = 200만원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⑥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 한 질병 및 상해
- ⑦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⑧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 생한 손해
- ⑨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 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 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①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② 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 담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 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파보 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파라 인플루엔자 감염, 전염성 간염, 아데노 바이러스 2 형 감염,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렙토스피 라 감염, 필라리아(심장사상충)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반려동물의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 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
- ⑪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 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② 한의학(단, 침술을 제외합니다.), 인도 의학, 허브요 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재활치료
- ③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귀 세정제 (이어 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진드기, 모낭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4)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 수수료,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5) 왕진 비용,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b)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⑰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⑱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 정하는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 제2항에 정하는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특약 이름[입원의료비Ⅱ보장 고급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1,000만원)을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8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입원 의료비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5만원
<u> </u>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5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8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6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16만원 1만원) × 80%, 15만원] 중 적은금액
 - = 1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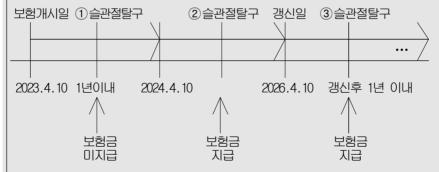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8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10만원-1만원) × 80%. 250만원] 중 적은금액
 - = 25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② 특약 이름[입원의료비॥보장 기본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1,000만원)을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7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지급 한도
입원 의료비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5만원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5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7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21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21만원 1만원) × 70%, 15만원] 중 적은금액
 - = 1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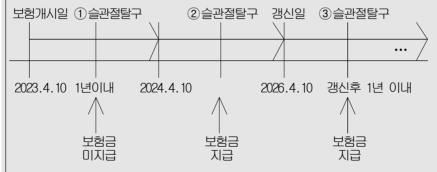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7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10만원-1만원) × 70%. 250만원] 중 적은금액
 - = 25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③ 특약 이름[입원의료비Ⅱ보장 실속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5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지급 한도
입원 의료비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0만원
1 H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5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1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11만원 1만원) × 50%, 10만원] 중 적은금액
 - =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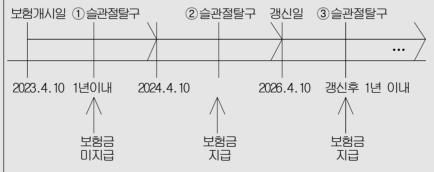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5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10만원-1만원) × 50%. 200만원] 중 적은금액
 - = 20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⑥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 한 질병 및 상해
- ⑦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⑧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 생한 손해
- ⑨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 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 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①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② 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 담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 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파보 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파라 인플루엔자 감염, 전염성 간염, 아데노 바이러스 2 형 감염,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렙토스피 라 감염, 필라리아(심장사상충)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반려동물의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 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
- ⑪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 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② 한의학(단, 침술을 제외합니다.), 인도 의학, 허브요 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재활치료
- ③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귀 세정제 (이어 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진드기, 모낭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4)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 수수료,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5) 왕진 비용,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b)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⑰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 (우송비 포함)
- ⑱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 정하는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 제2항에 정하는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Ⅱ.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 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
용어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
	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
	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② 알릴의무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
	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중요한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사항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보상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 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 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 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 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보상 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자기 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 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④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
101	니다.
계약자 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 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해약 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6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 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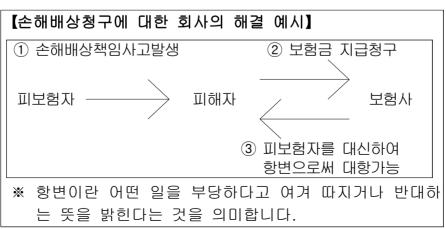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 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

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로 증가된 손해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0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 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 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 게 초과하는 때
-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은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 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 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①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 특약 이름[펫퍼민트 반려견 배상책임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 권에 기재된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 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그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 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 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 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 및 별거 중인 미혼자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 다.

- 1. 8촌이내의 혈족
- 2. 4촌이내의 인척
- 3. 배우자
- ③ 제2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4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①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 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 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 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 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 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②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 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9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의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5 제4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① 제4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 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 3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배상책임 손해액을 보 상합니다.
 - ② 제4항 제2호 ①, © 또는 回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③ 제4항 제2호 © 또는 @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따른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 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또는 이들의 법 정대리인의 고의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
 -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⑥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 ①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 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⑧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 ⑨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⑩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 ⑪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⑫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③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 (4) 가입 반려견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5) 가입 반려견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